

감 사 원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포천시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

조 치 기 관 포천시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포천시 등 13개 기관³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³⁵⁾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4개 기관³⁶⁾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허가 사실 등을 대구광역시에 통보하고 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4) 포천시, 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35) 광역교통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무가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지 않음)

36)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³⁷⁾ 등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승인 또는 인가·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포천시 ▲과는 2017. 11. 10. 포천시 건축과로부터 ㄹ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 건설사업계획³⁸⁾에 대한 승인(승인일자: 2017. 11. 8.) 내용을 통보³⁹⁾받고도 시내버스 민원 등 다른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문제를 제기하자 법정 부과일(2018. 1. 7.)보다 5개월이 지난 2018. 5. 24. 사업시행자(ㄹ주택조합)에

37) 주상복합 건축물

38) 위치: 포천시 일원,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9개 동 829세대

39) 2017. 11. 8. 승인내역 중 사용검사에정일을 정정(2017. 8. 31. → 2020. 7. 30.) 통보한 문서로 과장 선람

1,631,454,000원을 부과하는 등 [별표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포천시 등 10개 기관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총 40건에 대해 계 9,098,604,000원을 법정 부과기한 내에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건축과)는 2017. 3. 3. 주식회사 ◇◇에 대하여 관 내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22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건축허가를 하고도 그 사실을 대구광역시(▼과)에 통보하지 않는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4개 자치구⁴⁰⁾는 [별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미통보 명세”와 같이 2014. 6. 20.부터 2017. 3. 3.까지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총 6건의 건축허가를 한 후 그 사실을 대구광역시(▼과)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대구광역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 114,556,000원을 법정 부과기한 내에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과소 부과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이하 해당 건축물을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m²당 표준건축비(이하 “표준건축비”라 한

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다)와 부과율 그리고 건축연면적⁴¹⁾의 곱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건축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건축설비, 승강기 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연면적 합계) 산정 시에는 ‘주택인 시설’(공동주택 부분)에 포함되는 주차장,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 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17. 8. 11. 공동주택 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건축허가를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주: 주식회사 ♡♡)에 대해 2018. 3. 5. ‘주택인 시설’(공동주택 부분) 건축연면적을 2,770.88㎡(실제: 1,129.96㎡, 적용: 3,900.84㎡) 과다 산정하고, 1,041,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 표준건축비를 1,812,000원으로 적용하여 58,921,000원이 과다 산정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0,683,000원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등 [별표 4] “광역

4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건축연면적 산정 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등을 제외하여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주택인 시설’과 건축연면적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교통시설부담금 과다 부과 명세”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 3개 기관⁴²⁾은 총 6건의 건축물에 대해 주택인 시설 건축연면적을 과다 산정하고 표준건축비를 잘못 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 106,852,000원을 과다 부과하였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소 부과

부산광역시는 2016. 2. 18. 주식회사 ♡♡가 시행하는 강서구 ❧지구 씨블럭 (전체 사업면적 161,689.10m²)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업무시설 연면적 32,023.40m² (실제 89,386.21m², 적용: 57,362.81m²)를 누락하여 318,627,000원이 과소 산정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6,655,000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울산광역시는 2017. 12. 18. 주식회사 ♡♡개발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택인 시설’(공동주택 부분)에 포함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연면적 2,594.39m²를 부과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한 채 건축연면적을 산정하여 부담금 13,449,000원을 적게 부과하는 등 [별표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소 부과 명세”와 같이 부산광역시 등 5개 기관⁴³⁾은 총 21건의 건축물에 대해 주택인 시설의 건축 연면적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 840,523,01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포천시, 양주시 등 5개 시⁴⁴⁾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구광역시

4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중 부산광역시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주택건설사업 계 95건 중 부담금 부과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58건에 대해 업무시설 연면적을 포함하여 부담금 부과 연면적을 산정하였는지를 점검하였고, 나머지 4개 기관은 전체 건에 대해 점검

44) 포천시, 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5개 자치구⁴⁵⁾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대구광역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6건에 대하여는 2018. 5. 29. 및 같은 해 5. 30. 모두 부과하였고, 과다부과·징수한 2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환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4개 자치구⁴⁶⁾ 역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업무시설 연면적을 누락한 채 부담금을 적게 부과한 6건에 대해 그 부족 징수액을 추징하고, 이번 감사기간 중 업무시설 연면적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지 못한 부담금 1억 원 미만 주택건설사업 35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하여 부족 징수액을 추징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울산광역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담금을 적게 부과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 10건에 대해 그 부족 징수액을 추징하고, 향후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등 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5)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46)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포천시 등 11개 기관⁴⁷⁾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또는 환급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포천시 등 11개 기관의 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4개 자치구⁴⁸⁾의 장은 앞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해 허가 등을 한 사실을 대구광역시에 통보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장은

① 이번 감사기간 중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 원 미만의 주택 건설사업 35건에 대해 업무시설 연면적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부족 징수분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주식회사 ♡♡ 등 6개 사업시행자로부터 적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9,559,000원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6항에 따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울산광역시는 주식회사 ♡♡개발 등 10개 사업시행자로부터 적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057,000원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6항에 따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7) 포천시, 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구광역시

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별표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연번	기관명	유형	과소부과미부과액	과다부과액
계		3개 유형	10,053,683,010	106,852,000
1	포천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2,135,509,000	
2	양주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3,397,817,000	
3	시흥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2,984,028,000	
4	하남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124,245,000	
5	이천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54,432,000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99,314,000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계	144,175,010	18,828,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129,091,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다 부과		18,828,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소 부과	15,084,010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계	53,762,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51,062,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소 부과	2,700,000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계	58,231,000	59,927,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56,108,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다 부과		59,927,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소 부과	2,123,000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66,998,000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16,344,000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58,617,000	
13	대구광역시 북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17,138,000	
14	대구광역시 중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미부과	22,457,000	
15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다 부과		28,097,000
16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소 부과	779,559,000	
17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소 부과	41,057,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누락 명세

(단위: 일, 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 승인일	법정 부과기한	실제 부과일 (초과 일수)	부과 누락액
1	포천시	2층 주택조합 아파트	2017. 11. 8.	2018. 1. 7.	2018. 5. 24. (137)	1,631,454,000
2		- 주상복합1단지	2017. 7. 18.	2017. 9. 17.	2018. 5. 24. (249)	331,618,000
3		- 주상복합2단지	2017. 7. 18.	2017. 9. 17.	2018. 5. 24. (249)	172,437,000
4	양주시	- 아파트	2017. 7. 28.	2017. 9. 27.	2018. 5. 18. (233)	3,397,817,000
5	시흥시	- 공동주택	2016. 10. 14.	2016. 12. 12.	2018. 5. 17. (521)	1,462,905,000
6		- 공동주택	2017. 7. 7.	2017. 9. 4.	2018. 5. 17. (255)	346,181,000
7		- 공동주택	2017. 6. 22.	2017. 8. 20.	2018. 5. 17. (270)	483,563,000
8		- 공동주택	2017. 9. 26.	2017. 11. 24.	2018. 5. 17. (174)	691,379,000
9	하남시	- 공동주택	2016. 7. 11.	2016. 9. 10.	2018. 5. 28. (625)	36,672,000
10		- 공동주택	2018. 1. 10.	2018. 3. 9.	2018. 5. 28. (80)	87,573,000
11	이천시	- 공동주택	2017. 2. 2.	2017. 4. 3.	2018. 4. 11. (373)	54,432,000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 공동주택	2014. 9. 26.	2014. 11. 25.	2018. 5. 3. (1,235)	6,524,000
13		- 공동주택	2015. 4. 21.	2015. 6. 20.	2018. 6. 18. (1,028)	7,489,000
14		- 공동주택	2016. 3. 22.	2016. 5. 21.	2018. 5. 3. (692)	6,918,000
15		- 공동주택	2016. 7. 8.	2016. 9. 6.	2018. 5. 3. (584)	7,086,000
16		- 공동주택	2017. 6. 26.	2017. 8. 25.	2018. 5. 3. (231)	26,717,000
17		- 공동주택	2017. 9. 1.	2017. 10. 31.	2018. 5. 3. (164)	7,271,000
18		- 공동주택	2017. 9. 12.	2017. 11. 11.	2018. 5. 3. (153)	7,261,000
19		- 공동주택	2017. 11. 22.	2018. 1. 21.	2018. 5. 3. (82)	11,633,000
20		- 공동주택	2018. 1. 29.	2018. 3. 30.	2018. 5. 3. (14)	9,516,000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 승인일	법정 부과기한	실제 부과일 (초과 일수)	부과 누락액
21		- 공동주택	2018. 2. 5.	2018. 4. 6.	2018. 5. 3. (7)	8,899,000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동주택	2015. 7. 9.	2015. 9. 6.	2018. 4. 23. (950)	5,182,000
23		- 공동주택	2017. 4. 12.	2017. 6. 10.	2018. 4. 18. (307)	12,864,000
24		- 공동주택	2017. 8. 10.	2017. 10. 8.	2018. 5. 2. (187)	8,856,000
25		- 공동주택	2017. 9. 7.	2017. 11. 6.	2018. 4. 16. (158)	9,067,000
26		- 공동주택	2017. 9. 14.	2017. 11. 12.	2018. 4. 23. (152)	78,707,000
27		- 공동주택	2018. 2. 7.	2018. 4. 7.	2018. 4. 23. (6)	7,144,000
28		- 공동주택	2018. 2. 9.	2018. 4. 9.	2018. 4. 23. (4)	7,271,000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공동주택	2017. 1. 24.	2017. 3. 25.	2018. 5. 9. (384)	17,570,000
30		- 공동주택	2017. 8. 2.	2017. 10. 1.	2018. 5. 9. (194)	33,492,000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공동주택	2017. 5. 11.	2017. 7. 8.	2018. 5. 24. (279)	7,795,000
32		- 공동주택	2017. 8. 24.	2017. 10. 21.	2018. 5. 23. (174)	15,290,000
33		- 공동주택	2017. 9. 18.	2017. 11. 15.	2018. 5. 23. (149)	7,638,000
34		- 공동주택	2017. 9. 25.	2017. 11. 22.	2018. 5. 23. (142)	9,694,000
35		- 공동주택	2017. 10. 27.	2017. 12. 24.	2018. 5. 23. (110)	8,045,000
36		- 공동주택	2017. 12. 14.	2018. 2. 10.	2018. 5. 23. (62)	7,646,000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 공동주택	2017. 11. 12.	2018. 1. 11.	2018. 5. 10. (92)	10,196,000
38		- 공동주택	2017. 11. 12.	2018. 1. 11.	2018. 5. 10. (92)	10,189,000
39		- 공동주택	2017. 11. 29.	2018. 1. 28.	2018. 5. 10. (75)	37,876,000
40		- 공동주택	2017. 12. 29.	2018. 2. 26.	2018. 5. 10. (46)	8,737,000
10개 기관 계						9,098,604,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미통보 명세

(단위: 일, 원)

연번	건축허가 기관명	허가일	사업 시행자	대지위치	건축물 용도 및 세대수	법정 부과기한 (초과 일수 ²⁾)	미부과액
1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7. 3. 3.	(주)◇◇	수성구	공동주택(아파트) 22세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소매점)	2017. 5. 2. (380)	16,344,000
2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 6. 20.	-	달서구 - 외 1필지	공동주택(아파트) 25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소매점)	2014. 8. 19. (1,367)	18,975,000
3		2015. 4. 15.	(주)-건설	달서구	공동주택(아파트) 2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사무소)	2015. 6. 14. (1,068)	23,385,000
4		2015. 11. 18. ¹⁾	-외 3명	달서구	공동주택(아파트) 21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2016. 1. 17. (851)	16,257,000
5	대구광역시 북구	2015. 4. 24.	(주)-건설	북구	공동주택(아파트) 24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2015. 6. 23. (1,059)	17,138,000
6	대구광역시 중구	2016. 3. 17.	(주)-주택	중구	공동주택(아파트) 2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제2종 근린 생활시설(사무소)	2016. 5. 16. (731)	22,457,000
4개 기관 계							114,556,000

주: 1. 연번 4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2014. 12. 22. 공동주택(아파트) 19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2015. 11. 18. 공동주택을 19세대에서 21세대로 변경허가

2. 초과 일수는 법정 부과기한으로부터 2018. 5. 17. 현재까지의 일수로 산정

자료: 대구광역시 제출자료

[별표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 부과 명세

(단위: 원)

기관명	연번	대지위치 (사업시행자등)	부과일	부과금액 (A)	정상 부과금액 (B)	차액 (A-B)	과다 부과 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2018. 3. 5.	70,683,000	11,762,000	58,921,000	주택인 시설 연면적 2,770.88㎡ 과다 산정, ㎡당 표준건축비 잘못 적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2014. 9. 4.	84,524,000	84,021,000	503,000	주택인 시설 이외인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5.74㎡ 포함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2014. 9. 4.	84,524,000	84,021,000	503,000	주택인 시설 이외인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5.74㎡ 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외 1필지 [㈜- 외 1인]	2017. 11. 9.	35,215,000	16,387,000	18,828,000	주택인 시설 이외인 근린생활시설및 업무시설 연면적 1,192.16㎡ 포함, 주택인 시설 연면적 651.69㎡ 과소 산정
대구 광역시	5	달성군 - (-㈜)	2017. 12. 12.	449,150,000	431,472,000	17,678,000	건축연면적에 승강기 면적을 포함하여 과다 산정
	6	달서구 - [-지역주택조합, -㈜]	2018. 1. 8.	314,045,000	303,626,000	10,419,000	
계						106,852,000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소 부과 명세

(단위: 원)

기관명	연 번	대지위치 (사업시행자등)	부과일	부과금액 (A)	정상 부과금액 (B)	차액 (B-A)	과소 부과 사유
부산광역시	1	부산진구 - [-건설주]	2015. 9. 9.	230,814,000	291,399,000	60,585,000	업무시설 연면적 6,135.85㎡ 과소 산정
	2	강서구 - 비지구 씨블럭 [주·소·소]	2016. 2. 18.	506,655,000	825,282,000	318,627,000	업무시설 연면적 32,023.40㎡ 과소 산정
	3	동래구 - 외 4필지 [주-외2]	2016. 3. 10.	188,294,000	286,473,000	98,179,000	업무시설 연면적 9,943.25㎡ 과소 산정
	4	해운대구 - 외 4필지 [주-개발]	2016. 3. 14.	349,981,000	374,591,000	24,610,000	업무시설 연면적 2,533.33㎡ 과소 산정
	5	강서구 - [-신탁주]	2016. 7. 20.	462,875,000	549,305,000	86,430,000	업무시설 연면적 8,495.49㎡ 과소 산정
	6	강서구 - [-신탁주]	2017. 6. 20.	1,079,759,000	1,270,887,000	191,128,000	업무시설 연면적 18,434.48㎡ 과소 산정
울산광역시	7	남구 - [-개발주]	2017. 11. 13.	9,695,000	9,754,000	59,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11.42㎡ 과소 산정
	8	동구 - [주·소·소·개발]	2017. 12. 18.	49,710,000	63,159,000	13,449,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2,594.39㎡ 과소 산정
	9	남구 - [주-]	2018. 1. 2.	20,578,000	27,366,000	6,788,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1,332.24㎡ 과소 산정
	10	남구 - 외 1필지 [주-주택]	2018. 1. 15.	20,795,000	25,538,000	4,743,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930.88㎡ 과소 산정
	11	남구 - 외 1필지 [주-]	2018. 2. 12.	19,218,000	23,927,000	4,709,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924.24㎡ 과소 산정
	12	중구 - 외 6필지 [주-건설]	2018. 2. 26.	14,960,000	17,753,000	2,793,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548.36㎡ 과소 산정
	13	동구 - 외 1필지 [주-개발 외1]	2018. 3. 16.	11,754,000	13,951,000	2,197,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431.38㎡ 과소 산정

기관명	연 번	대지위치 (사업시행자 등)	부과일	부과금액 (A)	정상 부과금액 (B)	차액 (B-A)	과소 부과 사유
	14	중구 - 외 3필지 [주-]	2018. 4. 3.	18,896,000	20,183,000	1,287,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252.75㎡ 과소 산정
	15	중구 - 외 2필지 [주-개발]	2018. 4. 9.	14,249,000	14,735,000	486,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96.15㎡ 과소 산정
	16	남구 - 외 1필지 [주-]	2018. 4. 12.	29,607,000	34,153,000	4,546,000	주상복합건물 부대 시설 연면적 892.22㎡ 과소 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2016. 12. 5.	31,407,000	33,530,000	2,123,000	주택인 시설 연면적 214.18㎡ 과소 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외 12인)	2016. 11. 23.	37,411,000	48,549,000	11,138,000	주택인 시설 연면적 1,009.58㎡ 과소 산정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 외 1필지 (-)	2017. 8. 9.	12,333,990	14,826,000	2,492,010	주택인 시설 이외인 근린생활시설 연면 적 37.49㎡ 포함, 주택인 시설 연면적 307.18㎡ 과소 산정, ㎡당 표준건축비 잘못 적용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 (-외 3인)	2017. 4. 18.	7,895,000	9,349,000	1,454,000	주택인 시설 연면적 148.77㎡ 과소 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 [주-]	2016. 8. 29.	76,159,000	78,859,000	2,700,000	주택인 시설 이외인 업무시설 연면적 1,520.64㎡ 포함, 주택인 시설 연면적 1,775.9㎡ 과소 산정
계						840,523,010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